한국체육대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지침

1. 개 요

가. 목적

-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지침을 참고하여 관련 **감염예방 및 대웅지침**을 수립 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함
- 감염병의 교내 유입을 차단하고, 의심환자가 발생시 **일관된 업무 체계**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등

다. 적용범위

한국체육대학교에 소속된 자에 한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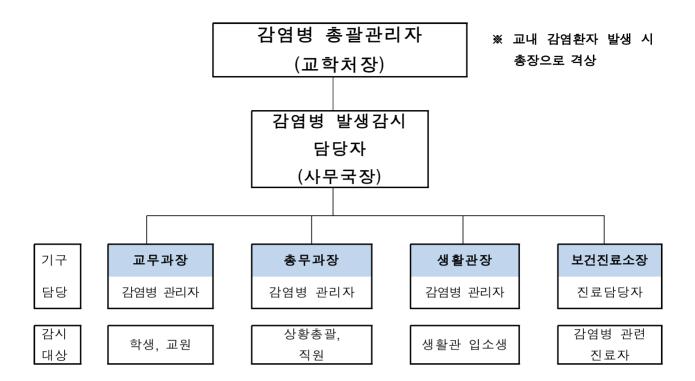
2. 각 관리조직별 주요업무

- 가. 「한국체육대학교 감염병 관리위원회」
 - 감염병 발생감시, 감염병에 대한 대학 내 예방 및 관리활동
 - 감염병 위기발생 시 학사관리, 행정업무 지원 등에 대한 의사결정
 - * 위원회 의결 후 총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적용함

나. 「한국체육대학교 감염병 관리조직」

- 구성 및 역할
- 감염병 발생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
-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 시 총괄지휘
- 감염병 (의심)환자 등 진행상황 취합 및 보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 대학 내 감염병 관리조직도 >



○ 운영 및 업무 프로세스

- * 대학 내 감염병 발생 정보 보고(감염병 관리자 ☞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
- * 감염병 발생 총괄정보 보고(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 🖙 감염병 총괄관리자 🖙 총장)
- * 신고대상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신고(총장 🖙 송파보건소)
- ※ 감염병 관리자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시보고

3. 위기경보단계에 따른 주요 업무

구분	판단 기준	우리대학 주요 임무
관심 (Blue)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 관련정보 수집·전파 · 대응태세 점검 ·감염병관리 대책위원회 업무분담 점검 및 담당자 교육
주의 (Yellow)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WHO 감염병 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 감염자, 유증상자, 유시환자 파악 보고 (학생 및 교원, 직원 등) · 개인위생 강화 및 시설물 방역, 소독실시 · 위기경보 주의상황 전파 ·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 · 교육부 및 보건당국과 협조체계 유지 · 전지훈련, 시합참여, 교육실승 등 단체 및 외부활동 자제
경계 (orange)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수인성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대비계획 점검, 보건당국 협조체계 유지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 ・휴교 검토 ・전지훈련, 시합참여, 교육실승 등 단체 및 외부활동 자제
심각 (Red)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즉각 대응태세 돌입 ·방역기관협조 일제 휴교 ·전지훈련, 시합참여, 교육실승 등 단체 및 외부활동 자제

4. 위기 대응별 조치사항

가. 예 방

- 보건진료소는 감염병의 특징, 의심증상 및 예방법,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전 부서와 학과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전파한다.
- 전 부서와 강의실은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도록 한다(2~3시간마다 환기)

나. 상황발생

○ 신고 및 방역

- 병결 학생 및 교직원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각 감염병 관리자 및 학교 보건 진료소에 알린다.
- 전부서와 학과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발견될 시, 즉시 보건 진료소에 연락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송파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선별진료소 를 통해 감염병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환자가 발생한 학과와 부서는 강의실, 화장실, 책상, 의자, 사물함, 출입문 손잡이 및 화장실 손잡이 등 모든 사물을 닦고, 소독한다.

※보건진료소 배부 :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등의 소독약

- 필요시 관할 송파구 보건소의 협조로 교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 복무

- 감염병 의심 및 감염으로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된 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기간동안 출석(또는 출근)을 인정을 받으며, 등교(또는 출근)시에는 격리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
- 감염병이 의심되어 확인중이거나,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거나, 치료가 완료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와 출근을 중지한다.

○ 역학조사

- 전부서 및 학과에서는 감염병 확진환자와 접촉한 학생 또는 교직원을 파악 하여 각 감염병 관리자 및 보건진료소에 보고한다.
- 보건진료소는 호흡기 감염증상으로 방문자를 면밀히 사정하고,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환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고,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감염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보건진료소는 감염병 의심환자와 접촉한 자에게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송파구 보건소의 확인하에 잠복기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행하도록 안내한다.

○ 보고 및 신고

- 총장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발생시 즉시 송파구보건소에 신고한다.
- 총무과장은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발생시, 교육부에 이를 보고하고, 상황 보고 서면자료를 제출한다.

다. 상황종료

-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마지막 접촉자의 최대 잠복기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가 없으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5. 학과 및 전부서 협조사항

부 서	임 무	비고
전부서	- 감염병발생 파악 및 신고 - 예방수칙 철저 준수 - 교육부 위기상황 접수시 학생, 교직원에게 즉시 전파 - 학교 대내·외 행사 등 자제 및 금지	
대학원 행정실,	- 행정지원 및 환자관리 - 부서장으로 중심으로 감염병관리 상황반 운영 - 등교하지 않는 학생 현황 파악 - 의심환자 및 접촉자 등교중지에 따른 조치	
교학처	- 등교 중지 장기화 및 휴업에 대한 대책 수립	
보건진료소	- 마스크, 손세정제 확보시 각 부서와 학과 배부 - 발열측정을 위한 체온계와 소독물품 준비 - 개인예방교육 홍보, 방역당국 긴밀협조 유지 - 의심환자 및 접촉자 발열체크 및 지속감시	
총무과	- 교내 발생현황에 대해 교육부에 유선 및 서면 보고 - 출근 제한자 파악 및 근태관리 - 의심 및 감염자 격리 이송지원 - 의심환자 및 접촉자	

붙임 1 주요 감염병의 잠복기, 전염 가능기간 및 격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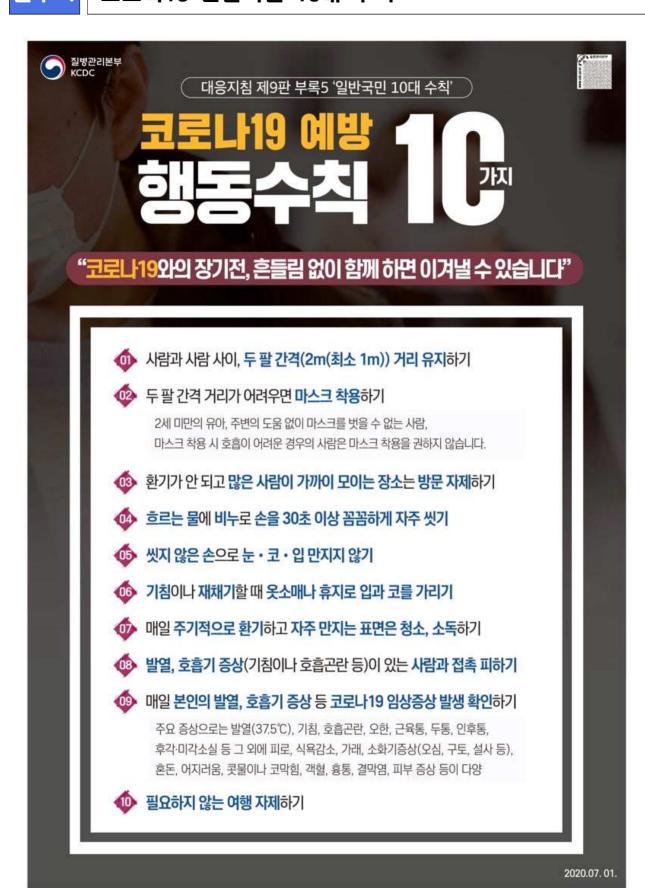
질 환명	전 파 경 로	잠복기	전염 가능 기간 등교 중지 기간	호발시기 및 연령	임상증상
유행성 이하선염	비말	7-23일 (14-18)	침샘이 커지기 1-2일전부터 모두 가라 앉을 때까지 또는 증상발현 후 9일까지 증상발현 후 9일까지	5-7월 15-17세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 부종
결핵	비말 에어로 졸	수주 [~] 수 개월	약물치료 시작후 2주까지 연중		발열,전신 피로감,
			약물치료 시작후 2주까지	전연령	식은땀, 체중감소
 풍진	비말 태반	12-23일 (16-18)	발진이 생기기전 7일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초봄,늦겨울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열등 감기증상
80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젊은 성인	
인플루	비말	1-5일 (2일)	증상발생 1-2일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때까지	봄, 겨울	발열,두통, 근육통,인후통 기침, 객담
엔자			등교중지는 의미 없음	전연령	
디프 테리아	비말	날 2-6일	치료받지 않은 환자는 감염 후 약 14시간, 적절한 치 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1-2일	봄, 겨울	발열, 인후와 편도발적,인후 부위 위막, 림프절 증대
			인두 혹은 비강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채취 배양하여 균이 2회 이상 음성일때까지	T14171	
조류	감염된 가금류 와 접촉	3-10일	증상 발생 1-2일 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때까지	가을철 전연령	인플루엔자와 동일 역학적연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	모두 회복될때까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비말	11말 2-10일 (4-6)	증상이 있는 동안	연중	급성호흡기 증상, 역학적 연관
			모두 회복될때까지	전연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	비말 14일	증상이 있는 동안	연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모두 회복될때까지	전연령	(기침, 인후통) 역학적 연관

붙임 2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7 8	법 정 감 염 병					
구분 	제1급	제2급	제3급	제 4 급		
특성	샘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0죵)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26종)	재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질 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증후군(SARS) 하. 동동호흡기증후군 신종 등후군(SARS) 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인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바. 제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한센병 러. 한센병 러. 한선용을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케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증(CRE) 감염증	·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고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후전성면역결핍증 (CJD) 및 변종크로이츠 펠트-아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치쿤구니야열 커. 주증열성혈소판 주는(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이다. 요충증이다. 요충증이다. 요충증이다. 요충증이다. 자흡충증이다. 장흡충증이다. 장흡충증이다. 장흡충증이다. 전기단순포진이라. 청기단순포진이라. 청기단순포진이 가면이 감염증이다. 생기단순포인에 무도일근(MRSA) 가.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이다. 다제내성아시네토 (MRPA)감염증이다. 다제내성아시네토 (MRAB)감염증이다. 다제내성아시네토이어 (MRAB)감염증이다. 장관감염증이다. 당염증이다. 장관감염증이다. 당염증이다. 강염증이다. 강염증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사람유주		
신고 기간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신고 방법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전에 알림					

첨부 '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첨부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유증상자 10대 수칙'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또는 폐렴 등

- ①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 ②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기**
-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기
-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기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 이용 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 ⑤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③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③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하기
- **⑨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 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기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0.07.0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내국인용]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시설 격리는 격리시설 내에서 별도 안내) (ex:6월 1일 입국하신 분은 6월 15일 1200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실시 *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이용하기
-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격리자 생활수칙

경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전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문 손잡이,욕실기구,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학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언무제한하기

발행일 2020,06.12







개인 위생수칙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입국하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거주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url.kr/9dqRor

구글 플레이



http://url.kr/5rntzH

앱 스토어



http://url.kr/f7dmWs

ID: CORONA 다운로드: 스토어 '에서 '자가격리자' 검색 * 만드로이드[Play 스토어], 아이콘(앱 스토어]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발행일 2020.06.12.

첨부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고위험군 생활수칙'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합니다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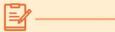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0.07.0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2판 부록3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79조3(병회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은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2020.08.20.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귀리 H19 대응지친 제9-2파 브로A -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당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2020.8.20.